

#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과정

- 가. 발의일자: 2023. 1. 20.
- 나. 발 의 자: 이금태 의원외 3명
- 다. 검토기간: 2023. 1. 25. ~ 1. 31. (7일간)

## 2. 관계법령

- 가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, 제4조, 제17조의2, 제17조의4  
제17조의6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과 미혼모의 산전·산후 관리 등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규정(안 제5조)
- 나. <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>에 따른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 외)

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미혼모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부적절한 용어, 문장, 띄어 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